
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 안내

1. 자격요건 :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^(*)

(*) 국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/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
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
2. 경감 적용일

가. 신청일 익일부터 요금할인

3. 신청절차

가.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구비서류 ※ ①, ②번 서류는 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

- ①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/이용·제공 위탁 동의서
- ③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
- ④ 어린이집 인가증(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'위탁계약증서')
- 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(고지서)

나. 신청방법: FAX 접수

- ① FAX : 051-623-4322

4. 할인방법 : 현재 적용중인 단가를 사회복지시설 단가로 변경하여 적용